

Member firm of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 감 사 보 고 서

제 3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新 韓 會 計 法 人  
Shinhan Accounting Corporation

#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 新韓會計法人

Member firm of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議事堂大路 8  
(汝矣島洞, 三煥까뮤빌딩 8層)

代表電話: (02)782-9200, 9942

F A X: (02)786-1890,761-7242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회 귀중

2014년 1월 14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내부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 한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李 相 文

이 상 문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 기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제 2 기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 1. 재단의 개황

1-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교육시설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2. 설립일: 2011년 12월 22일

1-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내(회현동 1가)

1-4. 이사장: 이순우

1-5. 사무국장: 권광석

1-6. 당기말 현재 출연금 현황

(단위: 원)

연도	출연자	출연금
2011년	우리금융지주 등	2,060,000,000
2012년	우리은행 등	17,940,000,000
합계		20,000,000,000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하 "본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내부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구분경리

본 재단의 회계장부는 그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며 각각의 재산상태 및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수익사업은 비영리 목적사업에 대한 것이며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활동 등 수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 2-2. 수익의 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4.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비품	5년

## 2-5.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본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바,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과 그 이외의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7. 법인세비용 산출 등

본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종류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우리은행	48,221,668	1,635,458
	MMW(*1)	우리투자증권	1,192,909,174	1,191,634,083
	소계		1,241,130,842	1,193,269,54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2)	우리은행	16,000,000,000	16,000,000,000
	정기예금(*2)	경남은행	1,500,000,000	1,500,000,000
	정기예금(*2)	광주은행	1,000,000,000	1,000,000,000
	소계		18,500,000,000	18,500,000,000
합계			19,741,130,842	19,693,269,541

(\*1) 우리투자증권에 예치한 초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Wrap, MMW)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금과 시가평가액의 차이 각각 24,350,033원과 11,622,3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에 계상된 정기예금은 본 재단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만기일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4. 선납세금의 내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선납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상대방	당기말	전기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 환급	남대문세무서	85,270,030	104,616,32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 환급	남대문세무서	-	965,52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 환급	서울시 중구청	-	96,390
합계		85,270,030	105,678,230

5. 유형자산의 변동내용 등

5-1. 당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비품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사무국	2,267,200	-	477,000	566,800	1,223,400
교육센터	57,004,432	-	28,653,532	28,350,900	-
합계	59,271,632	-	29,130,532	28,917,700	1,223,400

5-2. 전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비품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사무국	-	2,834,000	-	566,800	2,267,200
교육센터	-	59,367,000	-	2,362,568	57,004,432
합계	-	62,201,000	-	2,929,368	59,271,632



6. 무형자산의 변동내용 등

6-1. 당기 중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상각비	기말잔액
회계프로그램	1,958,367	-	-	479,600	1,478,767
홈페이지구축	4,583,334	-	-	1,100,000	3,483,334
합계	6,541,701	-	-	1,579,600	4,962,101

6-2. 전기 중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상각비	기말잔액
회계프로그램	-	2,398,000	-	2,398,000	1,958,367
홈페이지구축	-	5,500,000	-	5,500,000	4,583,334
합계	-	7,898,000	-	7,898,000	6,541,701

6-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류	구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당기말
소프트웨어	회계프로그램	2,398,000	919,233	1,478,767
	홈페이지구축	5,500,000	2,016,666	3,483,334
	합계	7,898,000	2,935,899	4,962,101

7. 예수금의 내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예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상대방	당기말	전기말
소득세 및 보험료 원천징수분	남대문세무서 등	1,071,080	1,089,390

8.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내용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	-
설정액	2,706,521	-
퇴직금지급액	-	-
기말잔액(*)	2,706,521	-
퇴직금추계액	2,706,521	-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부족 설정액은 없습니다.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내용

당기와 전기 중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1)	609,083,031	747,591,87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2)	609,083,031	747,591,877
기말잔액	-	-

(\*1) 본 재단은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과 그 이외의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당기와 전기 중 장학사업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 10.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결손금처리 예정일	2014년 3월 13일		2013년 3월 26일	
I. 미처리 결손금		171,191,228		136,328,286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36,328,286		-	
2. 당기순손실	34,862,942		136,328,286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609,083,031		747,591,87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9,083,031		747,591,877	
합계		437,891,803		611,263,591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609,083,031		747,591,87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9,083,031		747,591,877	
IV.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1,191,228		136,328,286

(\* ) 본 재단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음에 따라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사업회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하고, 비수익사업회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하고 있습니다.

## 11. 사실상 재무제표 확정일

본 재단의 재무제표는 2014년 3월 13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